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3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박강산 의원(1명)
찬 성 자: 박수빈, 박철성, 심미경,
우형찬, 유정인, 이병도,
이소라, 이승미, 이종태,
임종국, 전병주, 최재란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자치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기반 구축,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청년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자치구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나. 포상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③ 시장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
3.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생략)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u>시장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u>
<신 설>	1. <u>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u>
<신 설>	2. <u>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u>
<신 설>	3. <u>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u>
<신 설>	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신 설>	<u>제16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u>

문서번호

2023101600000020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박강산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18.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포상)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포상)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